

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중화장실
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4 월 18 일

여 수 시 장

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1862호

붙임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의 후단 중 “시설설”을 “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와 「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」에 따른 위탁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. 단,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실은 제외한다.

